

한국체육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제정 2019. 7. 22. 규정 제792호

1. 개정사유

- 「고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(강사 관련)이 2019.8.1.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 사항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.

2. 주요내용

- 임용·재임용은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이 임용 (안 제2조)
- 강사는 교과목 강의만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겸직 여부에 따라 전업강사와 비전업강사로 구분 (안 제3조)
-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교원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*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 가능 (안 제6조)
 - ※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징계, 6개월 이하의 연구년,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의 경우 학기 중 잔여기간에 대해 강사로 대체
- 강사의 신규채용, 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매 학기 별로 각 학과, 교양교직과정부에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둠 (안 제8조)
 - ※ 당연직인 학과장, 교양교직과정부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구성
- 신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일부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생략 가능 (안 제9조)
- 신규임용 이후 휴직·정직기간 등을 포함하여 총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해당 기간 중에 있는 강사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용기간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신청을 통지 (안 제10조)
- 매 학기 강의시간은 주당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당 9시간까지 인정 (안 제12조)
- 교육과정 개편, 학과 폐지, 전임교원 신규채용,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요구 등의 면직사유를 임용계약에 명시 (안 제16조)

- 강사의 급여는 담당 교과목에 대한 교수시간(학기중 급여)과 방학 중 급여로 구분하여 산정하고, 계절수업 강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급(안 제18조)

3. 주요 토의과제 : 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교육기본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불 입 : 제정 전문